

- 주요골자  
 - 常任委員會에도 關係公務員이 출석하여  
 답변할 수 있도록 함.
- 근거법령  
 地方自治法 第50條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수있는  
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 참석하여 답변할수있는관  
 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  
 정한다.  
 第1條중 “特別委員會”를 “委員會”라 한다.

附 則

이 條例는 公布한 날부터 시행한다.

新·舊條文對備表

現 行	改 正 (案)
第1條(目的) 이 條例는 地方自治法(이하 “法”이라 한다)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(이하 “議會”라 한 다) 또는 特別委員會(이하 “委員會”라 한 다)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關係公 務員의 범위를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.	第1條(目的) ..... ..... .....위원회에..... ..... .....
第2條(범위) (생략)	第2條(범위)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  
 조례개정조례(안)

- 개정이유  
 1991.12.31. 法律 第4,464호로 改正 公布  
 된 地方自治法第50條의 規定에 의거 自治  
 區議會에도 常任委員會를 설치할 수 있게  
 됨에 따라 “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  
 례”를 改正하여 相關사항을 정비하려 함.
- 주요골자  
 - 常任委員會의 설치와 위원정수를 규정  
 (第2條)  
 · 운영위원회- 9명  
 · 총무재무위원회-10명  
 · 시민보건위원회-10명  
 · 도시건설위원회-10명  
 - 常任委員과 常任委員長의 任期는 2年으  
 로 함.(第5條 및 第6條)  
 - 議會는 特정한 案件를 審査하기 위하여  
 特別委員會를 들 수 있음.(第7條)
- 관련법규

地方自治法 第50條 및 第54條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  
 조례개정조례(안)

“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”를 다음과  
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안

- 第1條(目的) 이 조례는 地方自治法 第54條의  
 規定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(이하  
 “議會”라 한다.)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 
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第2條(常任委員會의 設置) 議會에 두는 常  
 任委員會와 그 委員定數는 다음과 같다.  
 1. 運營委員會- 9명  
 2. 總務財務委員會-10명  
 3. 市民保健委員會-10명  
 4. 都市建設委員會-10명
- 第3條(常任委員會의 職務와 그 所管) ①常  
 任委員會는 그 所管에 속하는 의안과 청  
 원심사등을 처리하는 職務를 행한다.

②常任委員會의 所管은 다음과 같다.

1. 運營委員會

- 가. 議會運營에 관한 사항
- 나. 議會事務局 所管에 속하는 사항
- 다. 會議規則 및 議會運營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

2. 總務財務委員會

- 가. 總務局所管에 속하는 사항
- 나. 財務局所管에 속하는 사항
- 다. 文化公報室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라. 監査室所管에 속하는 사항
- 마. 市民奉仕室所管에 속하는 사항

3. 市民保健委員會

- 가. 市民局所管에 속하는 사항
- 나. 保健所所管에 속하는 사항

4. 都市建設委員會

- 가. 都市整備局所管에 속하는 사항
- 나. 建設局所管에 속하는 사항

③議長은 常任委員會의 所管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運營委員會와 협의하여 所管常任委員會를 정할 수 있다. 다만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議長이 所管常任委員會를 정한다.

第4條(常任委員會의 委員) ①議長은 하나의 委員(이하 “常任委員”이라 한다)이 된다. 다만, 運營委員會 委員은 겸할 수 있다.

②議長은 常任委員이 될 수 없다.

第5條(常任委員의 任期) ①常任委員은 선임된 날로부터 2年間 재임한다. 다만,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委員의 任期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委員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.

②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第6條(常任委員長) ①常任委員會에 委員長(이하 “常任委員長”이라 한다.)1인을 둔다.

②常任委員長은 소속 常任委員중에서 議長選舉의 예에 준하여 本會議에서 選舉한다.

③常任委員長의 任期는 常任委員과 같다.

④常任委員長은 本會議위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議長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第7條(特別委員會) ①議會는 특정한 안전을 審査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本會議의 議決로써 特別委員會를 둘 수 있다.

②議會는 豫算案과 決算을 審査하기 위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둔다.

③議會는 議員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審査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特別委員會는 그 委員會에서 審査한 案件이 本會議에서 議決될 때까지 존속한다.

第8條(特別委員會 委員長) ①特別委員會에서 委員長 1인을 두되 委員會에서 호선하고 本會議에 報告한다.

②特別委員會의 委員長이 선임될 때까지는 委員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特別委員會의 委員長은 그 委員會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第9條(委員의 선임) ①常任委員會의 선임은 議長이 추천하여 本會議의 議決로 선임한다.

②特別委員會의 委員은 第1項의 規定에 따라 常任委員중에서 선임한다.

第10條(委員長의 職務) 委員長은 委員會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.

第11條(幹事) ①委員會에는 幹事 1인을 둔다,

②幹事は 委員會에서 호선하고 이를 本會議에 報告한다.

③委員長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幹事가 委員長의 직무를 대리한다.

第12條(小委員會) ①委員會는 효율적인 안전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小委員會를 둘 수 있다.

②小委員會에서 審査를 마친 때에는 小委員會의 委員長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委員會에 報告한다.

第13條(준용규정) 이 條例에 規定한 사항의 의 委員會의 會議 運營·議事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會議規則을 준용한다.

附 則

①(시행일) 이 條例는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條例 施行당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이 條例에 의한 것으로 본다.